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75호 2015. 3.16.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3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321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3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341호 인천도시계획시설(시설명:주차장) 공사완료 공고 ----- 10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- 40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3. 13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14-1 외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03.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5-03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경서동 842-25	청라한울로49번길 14-1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963-10	청라커널로223번길 12-1	2011-06-29	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,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원창동 390-31	북향로 106	2009-08-28	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	
4	인천 서구 경서동 744-13	경서로55번길 7	2009-08-28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오류동 1652-3, 1652-2	검단로92번길 13	2012-10-25	검단로의 시작지점부터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당하동 1085-3	청마로93번길 9	2008-12-31	청마로의 시작지점부터 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오류동 432-1 외 4필지	원당대로205번길 2-67	2008-12-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부터 2,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 서구 당하동 1110-10	청마로134번길 10-21	2008-12-31	청마로의 시작지점부터 1,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원창동 437-31	북향로363번길 14-11	2013-12-02	북향로의 시작지점부터 3,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 서구 마전지구11블럭5-1롯데	검단로623번안길 1	2008-12-31	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	
11	인천 서구 마전지구11블럭5-2롯데	검단로623번안길 3	2008-12-31	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- 41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5. 03. 13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승학로402번길 21외 1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략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5-03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검암동 656-4	승학로402번길 21	2015-03-02	건축물 멸실	
2	인천 서구 검암동 648-17	승학로506번안길 82	2015-03-02	건축물 멸실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321호

##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의2(이행강제금)부과 규정에 의하여 부과 후 미납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처 분 명 :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
2. 근거법규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, 제30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고대상

위 치	행위자 (토지소유자)	위 반 사 항	반송주소
가정동 산61-23	김○순	○ 건축물 무단축조 (판넬/창고/13㎡,판넬/종교시설/39㎡)	인천 서구 봉오재3로14, 316동 402호(가정동,가정LH3단지)
공촌동 산18-6	이○상	○ 조립식패널/창고/12.0㎡	인천 서구 봉화로78,102동2001 호(오류동,검단풍림아이원동)

4. 공고기간 : 2015. 03. 06 ~ 2015. 03. 22(17일간)
5. 공고장소 : 각 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
6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관리팀(☎032-560-4683)

2015. 3. 6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34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16일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- ' 2011.7.21 하수도법 개정사항으로,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·운반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,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시 지원하는 제도로써
-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하수도법제56조의 2,동법시행령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
-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 ④ ~⑦ 신설

#### 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자원순환

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4425) 또는 Fax(560-2760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 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

제3조에 제4항, 제5항, 제6항,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분노 수집·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폐업지원금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.
-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노수집·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3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대행)	제3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대행)
① -----	① -----
② -----	② -----
③ -----	③ -----
<신   설>	④ <u>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법 제56조</u> <u>및 제56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</u> <u>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</u> <u>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	⑤ <u>폐업지원금은 「공익사업을 위</u> <u>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</u> <u>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를</u> <u>준용하여 산정한다.</u>
	⑥ <u>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</u> <u>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</u> <u>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
	⑦ <u>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</u> <u>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</u> <u>뇨수집·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</u> <u>안된다.</u>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341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시설명:주차장) 공사완료 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-66(2014.05.09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(시설명:주차장, 사업명:신현동 133-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5. 3. 16.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-1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【 종 류 】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
  - 【 명 칭 】 신현동 133-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
3. 사업시행 규모 : A = 346㎡, 주차면수 = 9면
4. 사업시행자
  - 【 성 명 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 - 【 주 소 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
5. 사업기간 : 2013. 09. 05. ~ 2015. 03. 03.